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신청일정

구분	일자	시간	장소
신청일시	해당지역 (인천광역시 거주자)	10:00~15:00	당사 견본주택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7월 4일(화)		
당첨자 선정	7월 5일(수)	14:00	당사 견본주택 개재
동·호수 발표	7월 13일(목)	금융결제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 당첨자 선정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연 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자격요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 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동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미성년인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 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지역별 예치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인감증명서(주택공급 신청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증빙 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견본주택 비치)
	자녀의 기본증명서(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입양의 경우)
대리인 신청시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 비치, 무직자의 경우)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신청인 인감증명서(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위 필요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해당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내용은 참고용이며, 더 정확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 및 소득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 산정방법

순위	대상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만 3년 이내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만 3년 초과 5년 이내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순위, 동일지역 거주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②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29)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 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선정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16년 통계청 고시자료)

구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4,884,448원 이하	5,630,275원 이하	5,596,59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861,338원 이하	6,756,330원 이하	6,715,914원 이하

□ 신혼부부 소득증빙 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구분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세무서 •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위 필요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해당됨.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내용은 참고용이며, 더 정확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